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1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여성청소년과장)
연 월 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일부개정(2020. 12. 8.)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(안 제3조)

- 제1항 협의회 구성 인원 (현행) 15명 이내 → (개정) 7명 이상 15명 이하
- 제2항 부의장 (현행) 교육장 → (개정) 고령군 체육회장

3. 개정안 : 붙임

4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발췌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의견없음(2021.09.13.~2021.10.02.)

다. 예산관련사항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별도협의

마. 규제영향분석 결과 : 별도협의

바. 기타 관련사항 :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 15명 이내로”를 “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장”을 “고령군 체육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, 부 의장 각 1명을 포함한 <u>위원 15</u> <u>명 이내로</u> 구성한	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위원 7명</u> <u>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</u> -- -----
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 은 <u>교육장</u> 이 된다.	② ----- -- <u>고령군 체육회장</u>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여성청소년과	
연 락 처	(054) 950-6343